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3가단509069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5. 4. 29.

판결 선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3,090,550원 및 그 중 29,561,339원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3. 10. 12.까지는 연 15%의, 2013. 10.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90,550원 및 그 중 29,561,339원에 대하여 2013.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2. 5. 7. 접수 제21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2. 5. 15. 접수 제22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공인전자서명의 추정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인인증의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거쳐행해진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증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그 인증행위가 인증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인증명의자에게 귀속됨을 주장하는 자가

인증명의자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인증행위가 이루어진 사실까지 입증할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항 기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 21.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대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전자금융 공인인증서(일련번호 E,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한다)에 의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말미에 피고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닌 F이 이 사건 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전자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행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거래의 효력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의 요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데,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2001다49814 판결 참조), 복대리인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참조).

(2) 기본대리권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딸인 C이 G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였고, G은 C에게 대출이 성사되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의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보증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실, C은 피고와 함께 2012. 2. 20. 주식회사국민은행 인천공항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G에게 이 사건 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넘긴 사실, G은 이를 다시 F에게 넘겼고, F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전자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로 일정한 범위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C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발급받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은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C이 피고를 설득한 방법은 불분명하나 아무리 피고가 전자금융거래에 낯설다고 하더라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에도 이 사건 인증서가 아닌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유사한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다) 최소한 이 사건 인증서가 피고 명의의 금융거래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C에게 이 사건 인증서를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C로부터 대출계약체결을 의뢰받은 G 및 F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이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A 작성의 이행보증보험계약서(이하 '주계약서'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A의 자택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H", 직장주소란에 "서울영등포구 I", 자택연락처란은 공란, 직장연락처란에 "J", 핸드폰란에 "K", 전자우편란에 "L", 우편물수령지란에 "직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서 모두의 보험계약자 A의 자택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M", 직장주소란은 공란, 자택연락처란에 "N", 직장연락처란은 공란, 핸드폰란에 "N", 전자우편란은 공란, 우편물수령지란에 "자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의 연대보증인 B의 자택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M", 직장주소란은 공란, 자택전화란에 "N", 직장전화란은 공란, 휴대전화란에 "N", 전자우편란은 공란, 우편물수령지란에 "자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유사한 O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27.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선행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선행 계약서역시 이 사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가 대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전자금융 공인인증서(일련번호 P)에 의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말미에 피고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사실, 선행 계약서 모두의 보험계약자 O의 자택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M", 직장주소란은 공란, 자택연락처란에 "N", 직장연락처란은 공란, 핸드폰란에 "N", 전자우편란은 공란, 우편물수령지란은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의 연대보증인 B의 자택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M", 직장주소란은 공란, 자택전화란에 "N", 직장전화란은 공란, 휴대전화란에 "N", 전자우편란은 공란, 우편물수령지란은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인천 계양구 M은 피고의 주소지이고, N은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번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보증인이 반대급부를 받음이 없이 주채무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부담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A와 피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 수있었을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와 주계약서는 거의 동일한 시점에 작성되었고, 이행보증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그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할 뿐 주소 등의 나머지 인적 사항(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이 전혀 다른 점, ⑤ 이 사건 계약서의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란의 주소 등이 동일하고, 이십여 일 전에 작성된 선행 계약서도 그러한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선행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서 선행 계약서의 보험계약자 O의 주소 등과 이 사건계약서의 보험계약자 A의 주소 등이 모두 연대보증인 B의 주소 등과 동일한 것을 알수 있었던 점, ⑥ 공인인증서는 최초 발급시에만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발급된후에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용도가 특정된 인감증명서와 달리 광범위한 전자거래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정상 양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⑦ 원고가 최소한 선행 계약서, 주계약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적 사항만이라도 비교해 보았으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의심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인증서만 믿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2. 5.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33,090,550원(= 29,561,339원 + 3,529,211원) 및 그 중원금잔액 29,561,33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최종송달일인 2013. 10. 12.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3. 10.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제가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5층

1층 내지 5층 각 519.82㎡

지하실 498.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계양구 대 355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4호 철근콘크리트 46.7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3551.3분의 35.93. 끝.

청 구 원 인

1. 구상금 청구

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의 체결

피고 A는 소외 주식회사 롯데삼강(이하 '소외 롯데삼강'이라고 합니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2. 3. 21. 피보험자를 소외 롯데삼강,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3. 19.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의 내용

(1) 약정 내용

위 보증보험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와 보증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①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 A·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원고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④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피고 A와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 일체의 부채채무도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합의관할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관한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보험금 지급

소외 롯데삼강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A가 외상물품대금 미지급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게 2012. 7.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7. 31. 소외 롯데삼강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9,845,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당시 피고 A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만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1. 1.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입니다.

(3) 보험금 일부회수

원고는 2012. 12. 19. 27,280원, 2013. 3. 13. 21,160원, 2013. 6. 26. 235,421원 등
합계 283,861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 6. 26. 당시 피고 A의 채무액은 원금 29,561,339원(= 29,845,200원
- 283,861원) 및 지연손해금 3,529,211원{ = 29,845,200원 $\times$ 30/365 $\times$ 0.06(2012. 8. 1.
부터 2012. 8. 30.까지 계산한 금액) + 29,845,200원 $\times$ 60/365 $\times$ 0.09(2012. 8. 31.부
터 2012. 10. 29.까지 계산한 금액) + 29,845,200원 $\times$ 50/365 $\times$ 0.15(2012. 10. 30.부
터 2012. 12. 18.까지 계산한 금액) + 29,817,920원 $\times$ 84/365 $\times$ 0.15(2012. 12. 19.부
터 2013. 3. 12.까지 계산한 금액) + 29,796,760원 $\times$ 105/365 $\times$ 0.15(2013. 3. 13.부
터 2013. 6. 25.까지 계산한 금액) + 29,561,339원 $\times$ 1/365 $\times$ 0.15(2013. 6. 26.부터
2013. 6. 26.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